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2016.6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며

일찍은 중학교 때 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고 있다. 그 노동이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첫 노동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의 경험으로 이후 직업에 대한 선택, 직업관, 노동관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노동현실은 탈법적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맞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폭언, 폭행, 성희롱에 휴게시간도 없이,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청소년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청소년노동 현장의 모습이다.

얼마 전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청소년노동, 비정규노동 현장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안전보다 이익을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질된 핵심에는 비정규직이 있다. 상시지속업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는 언제나 정치권의 구호나 공약으로만 그쳤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민간이 청소년노동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올해 ‘대전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학교’를 진행하였다. 현재 청소년노동 현장의 탈법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좀 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키고,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인들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16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대전광역시, 고용노동청,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노동문제 해법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 감시.감독, 홍보.개선,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 청소년노동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민관이 모인 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들과 비정규직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현장 만들기에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2016년 6월 22일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홍춘기

< 목 차 >

1장.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1
2장.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3
3장.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	19
1. 2016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2.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향	
4장.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21
1.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5장.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24
1.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별첨자료] 실태조사 설문지	27

< 그림 목차 >

[그림 1] 응답자 성별	3
[그림 2] 응답자 연령 분포	3
[그림 3] 근무기간	4
[그림 4] 1일 노동시간	4
[그림 5] 1주 노동시간	5
[그림 6] 최저임금 기준 나의 시급	5
[그림 7] 최저임금 미만 응답자 연령 / 성별분포	6
[그림 8] 최저임금 미만 응답자 성별 비율	6
[그림 9]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7
[그림 10]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7
[그림 11]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여부	8
[그림 12] 18세 미만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서 요구 여부	8
[그림 13] 주휴수당 지급 여부	9
[그림 14] 주휴수당 미지급 성별 분포	9
[그림 15] 아르바이트 종류	10
[그림 16] 아르바이트별 성별 비율	10
[그림 17] 아르바이트 목적	11
[그림 18] 임금 지출 계획	11
[그림 19] 노동 강도	12
[그림 20] 휴게시간과 휴게장소 보장 여부	12
[그림 21]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 경험	13
[그림 22] 부당한 대우 경험한 경우 대처 방법	14
[그림 23]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 대응하지 않은 이유	14
[그림 24]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 대응했을 때 해결 여부	15
[그림 25]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생각	15
[그림 26] 시급한 처우 개선점에 대한 생각	16
[그림 27] 대전광역시에 바라는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17

I.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1. 2016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의 목적

- ❖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환경을 알아보고자 함.
- ❖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해결 과제를 찾기 위함.
- ❖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실태조사 기간

2016년 5월 16일 - 6월 10일까지

3. 실태조사 대상

만 15세부터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

4. 실태조사 방법

만 18세이상은 면접 설문조사 진행

만 15세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방법으로 진행

5. 실태조사 장소

한남대, 대전대, 충남대, 배재대 주변, 특성화고 학생들, 청소년쉼터, 으능정이 주변

6. 실태조사 기관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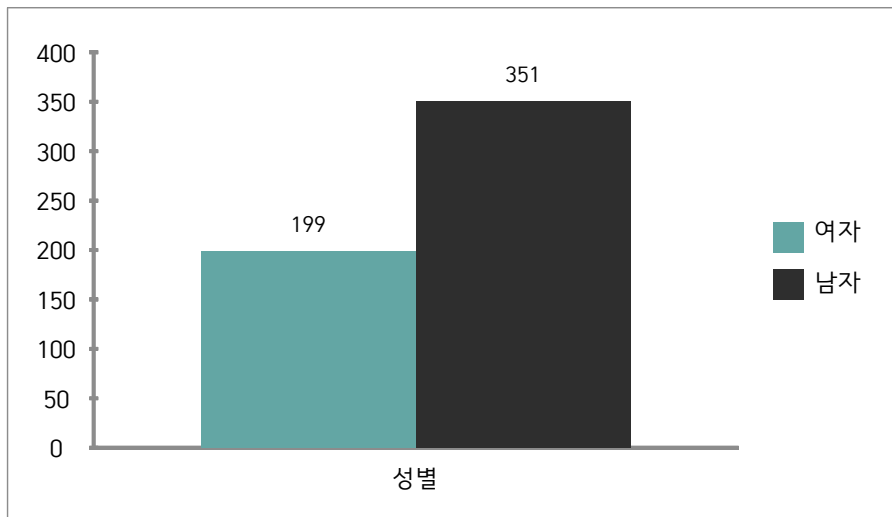
7. 실태조사 결과 : 총 600여명 중 유효응답자 550명

Ⅱ.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기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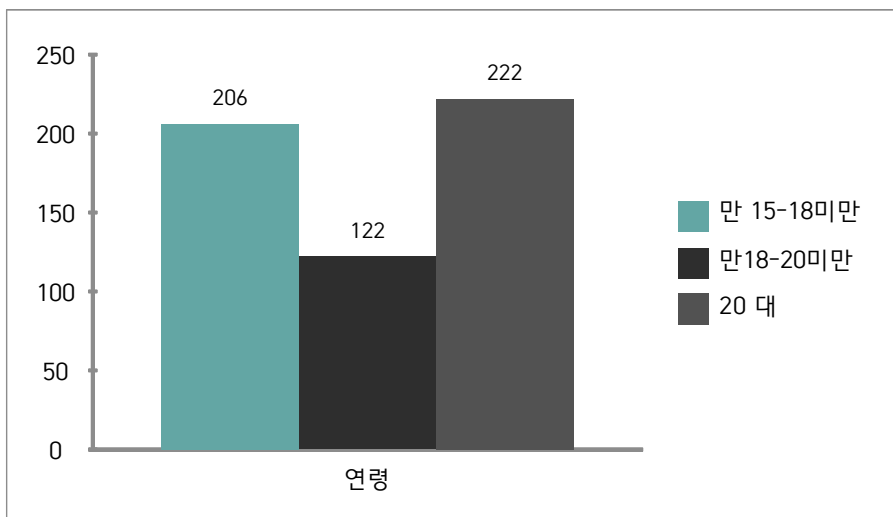
□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총 550명중 여성은 199명(36%), 남성은 351명(64%) 이다.

그림 1 응답자 성별 (명)



□ 연령대별로는 만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 206명(여성 13명)이며 18세 이상이 344명(여성 186명)이다. 만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여성의 응답자 비율이 너무 낮아, 실제적인 통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조건을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응답자 연령 분포 (명)



2) 노동조건

①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았으며, 6개월 이상의 장기간노동이 27%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시간의 경우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시간이 69%, 8시간이상의 경우는 31%로 조사 되었으나, 1주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157명(29%)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근무 기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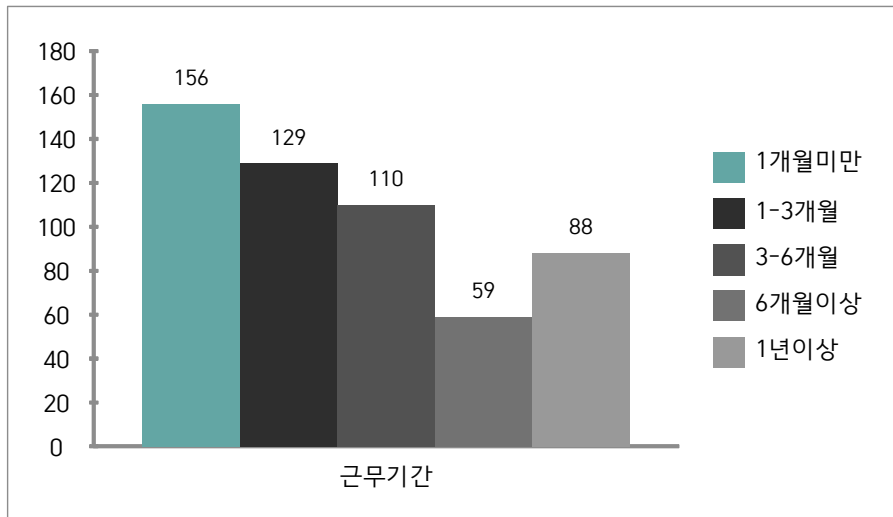


그림 4 1일 노동시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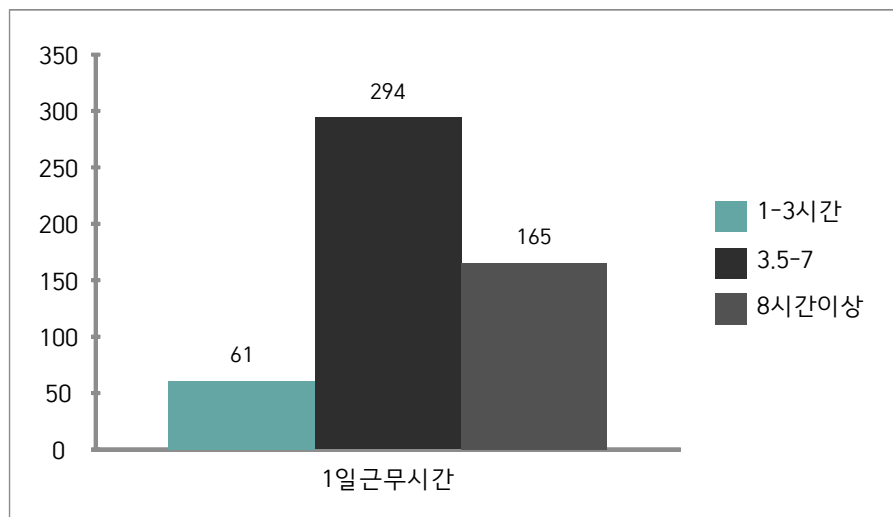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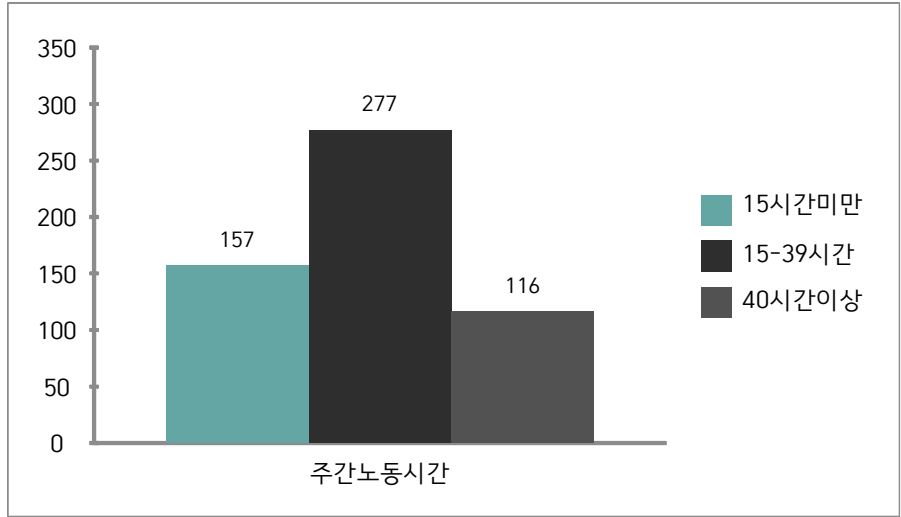


그림 5 1주 노동시간 (명)



② 최저임금

- 임금 조사의 경우 2015년 2016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110명(20%)으로 나타났으면 그중 여성이 48(24%) 남성이 62(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세미만이 3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여성들이 18세미만의 경우 거의 조사가 되지 못하여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최저임금 기준 나의 시급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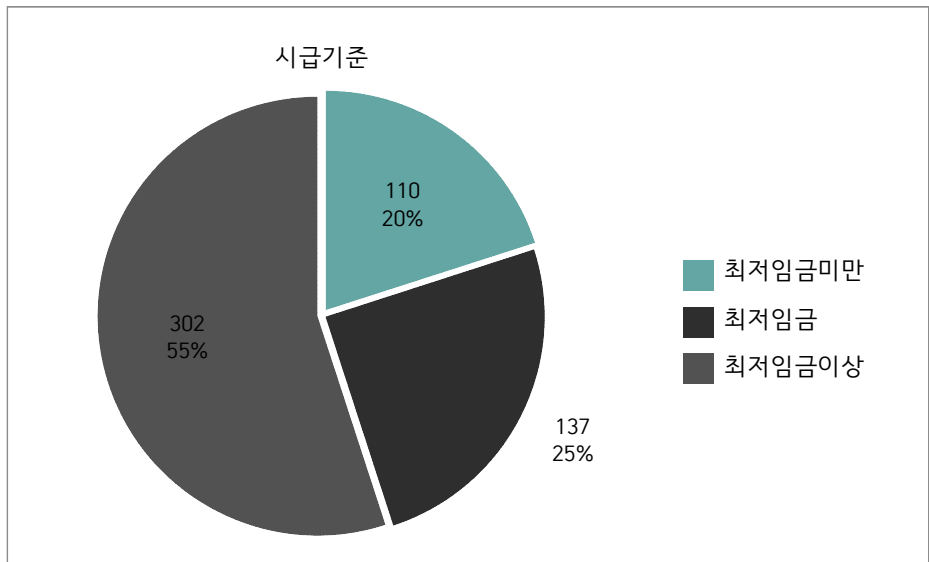


그림 7 최저임금 미만 응답자 연령 / 성별 분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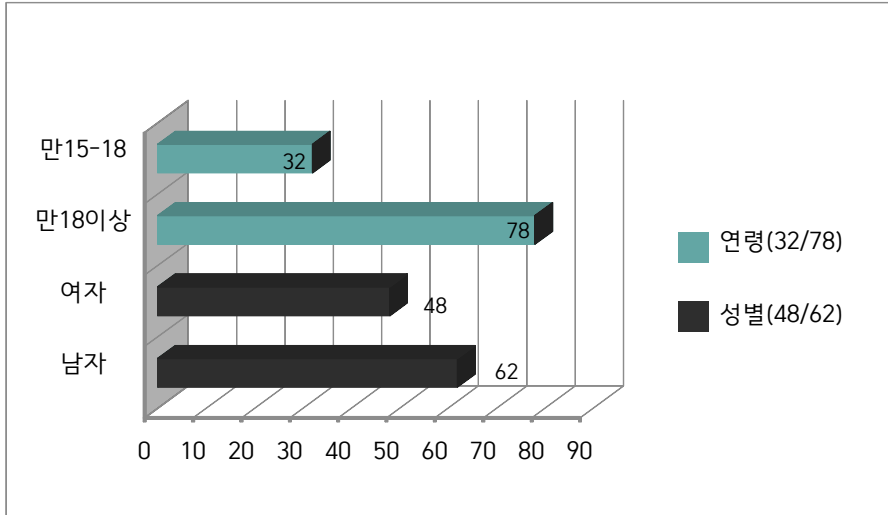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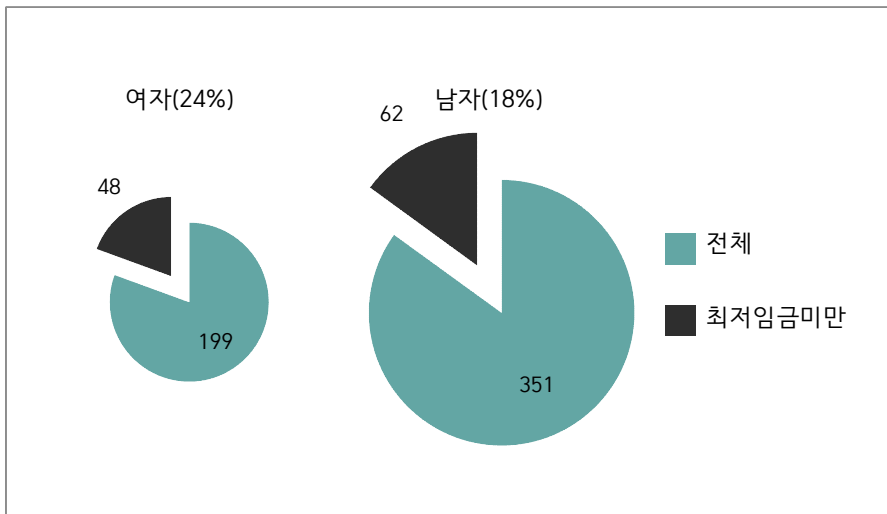


그림 8 최저임금 미만 응답자 성별 비율 (명)



- 청소년 91%가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최저임금 수준은 68% 응답자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현재 최저임금 6,030원에서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8,000원 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36% 나 되었다.

그림 9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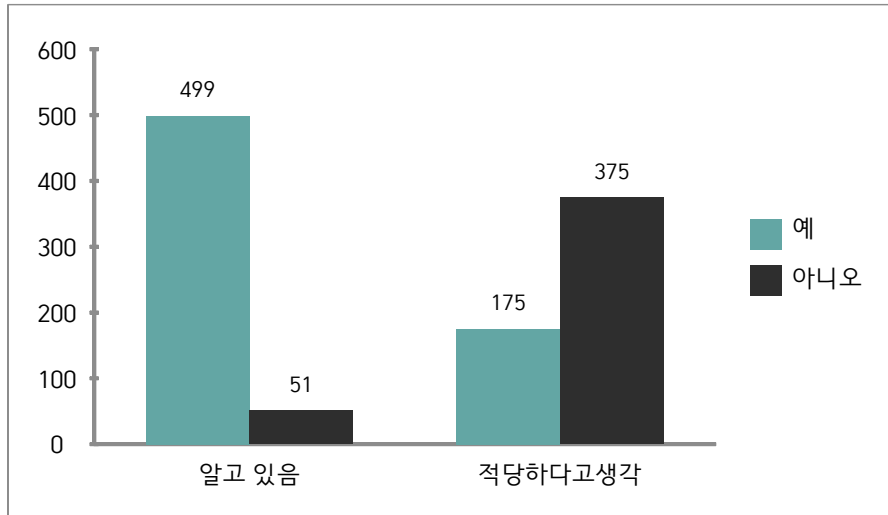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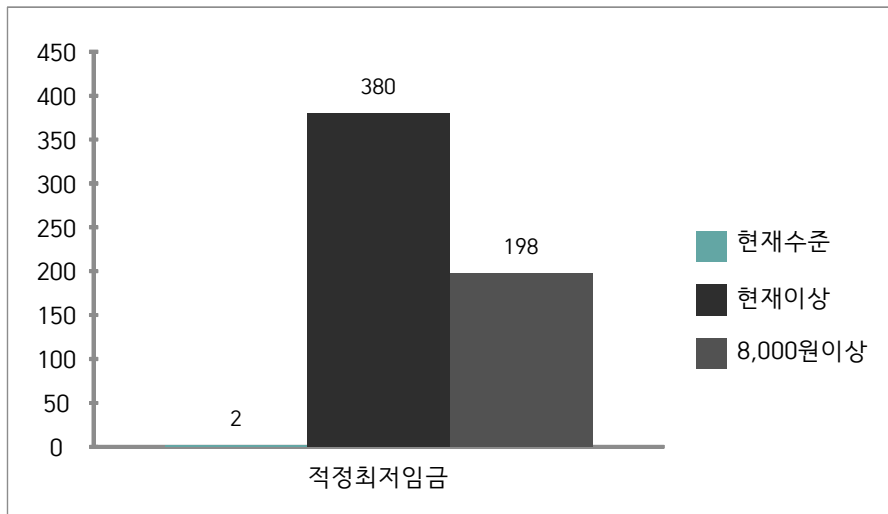


그림 10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명)



③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52%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 18세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나 후견인등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30%의 청소년들은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여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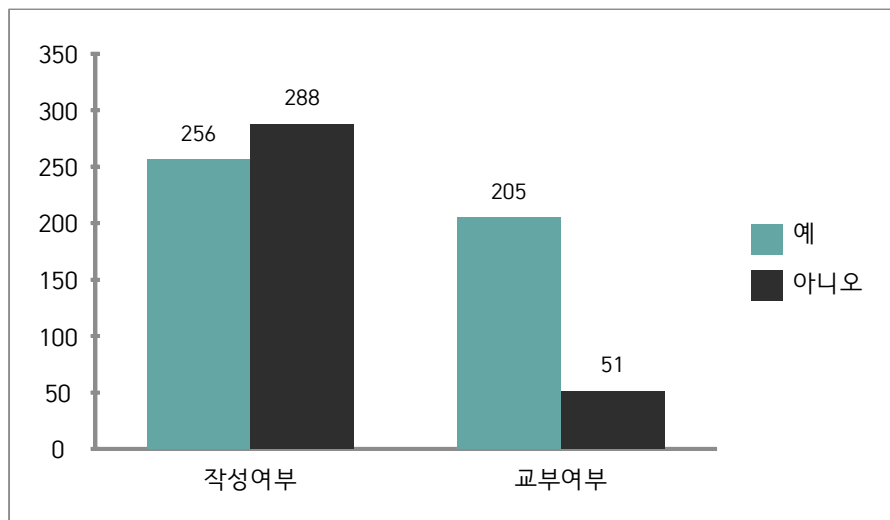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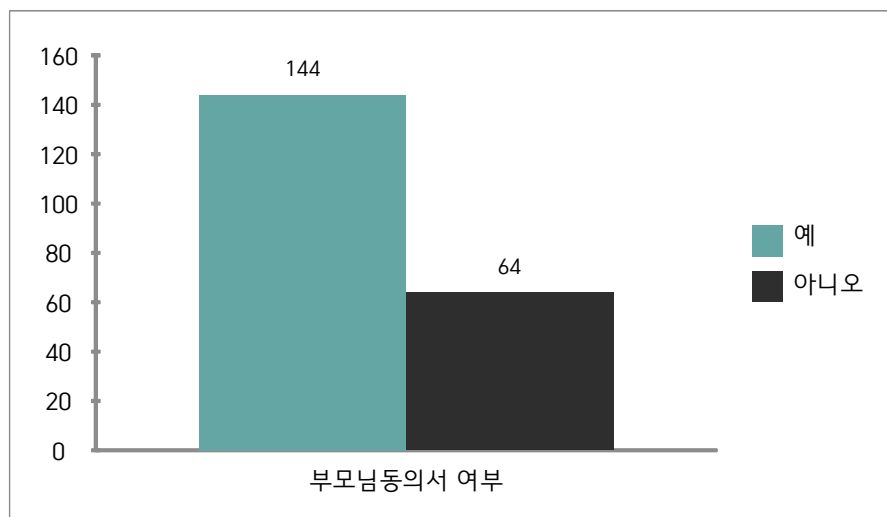


그림 12 18세 미만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서 요구 여부 (명)



④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67%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성별 분포는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여성 응답자들이 거의 없어, 주휴수당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조사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주휴수당 지급 여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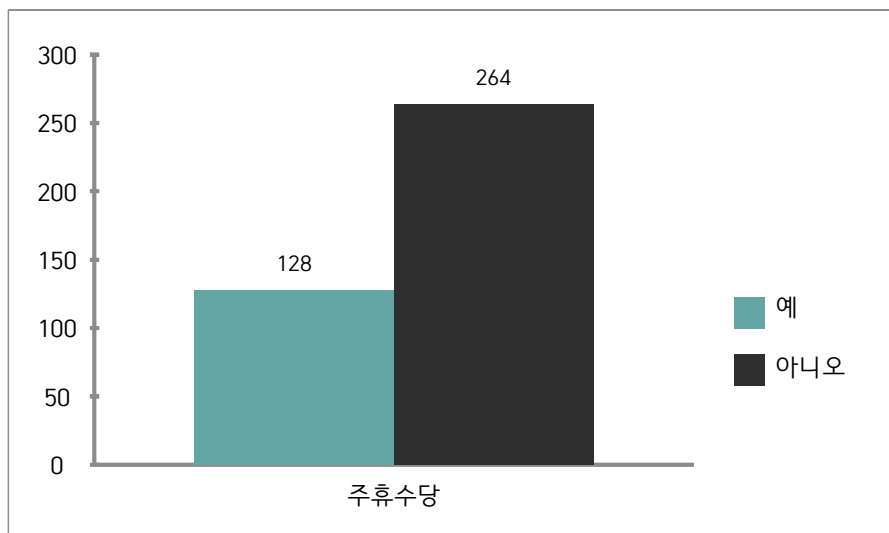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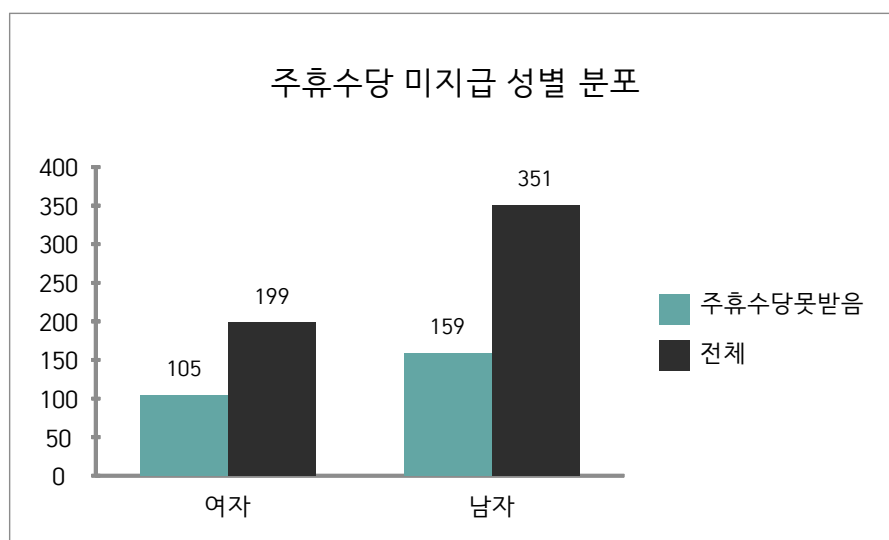


그림 14 주휴수당 미지급 성별 분포 (명)



⑤ 아르바이트 업무 종류와 목적

-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일로 카운터 및 서빙 (편의점, PC방, 음식점) 일이었으며(65%), 택배, 전단지 배포 순이었다.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199명중에 156명이(그림15) 카운터 및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림 15 아르바이트 종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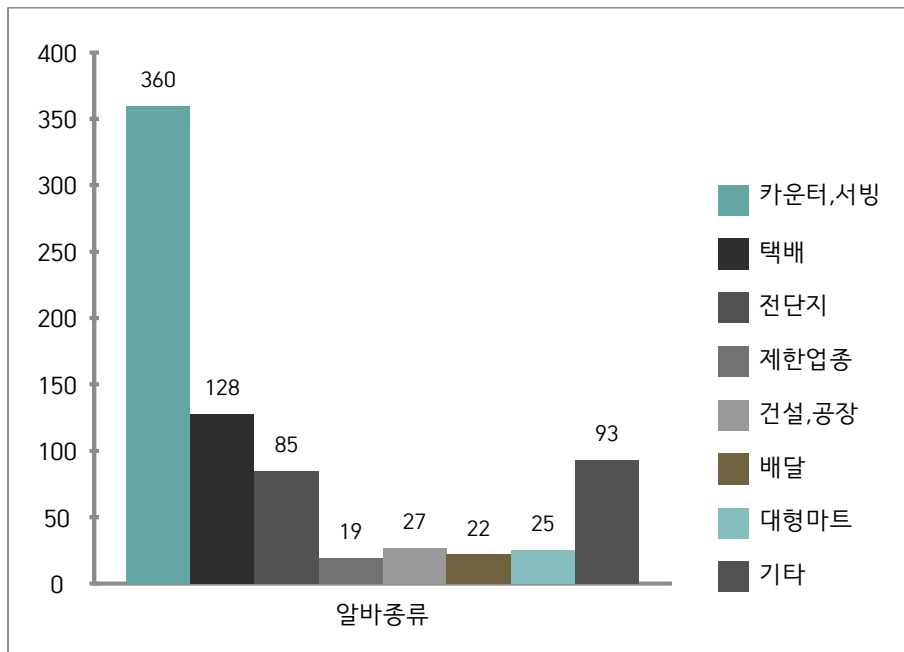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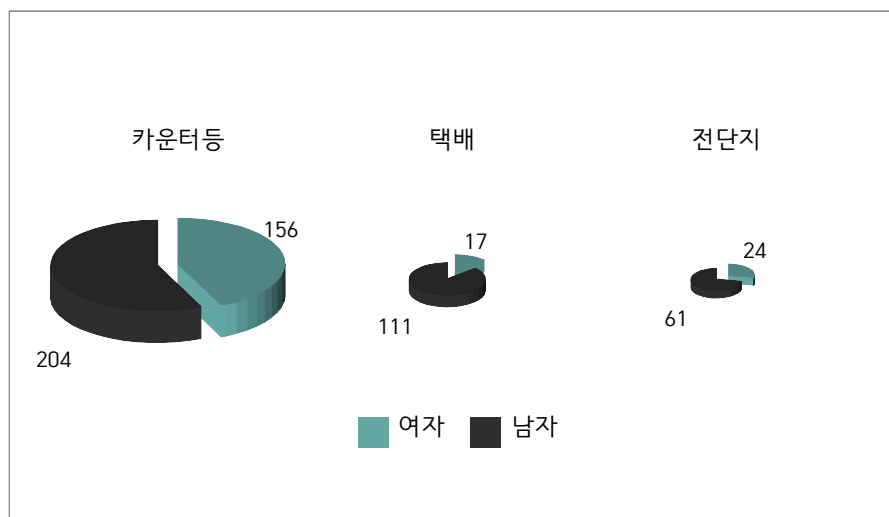


그림 16 아르바이트별 성별 비율 (명)



-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으로는 대부분이 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받은 임금의 지출 분야로는 50% 이상이 여가활동비 (여행, 쇼핑)로 지출되며, 그 밖에 생활비와 저축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아르바이트 목적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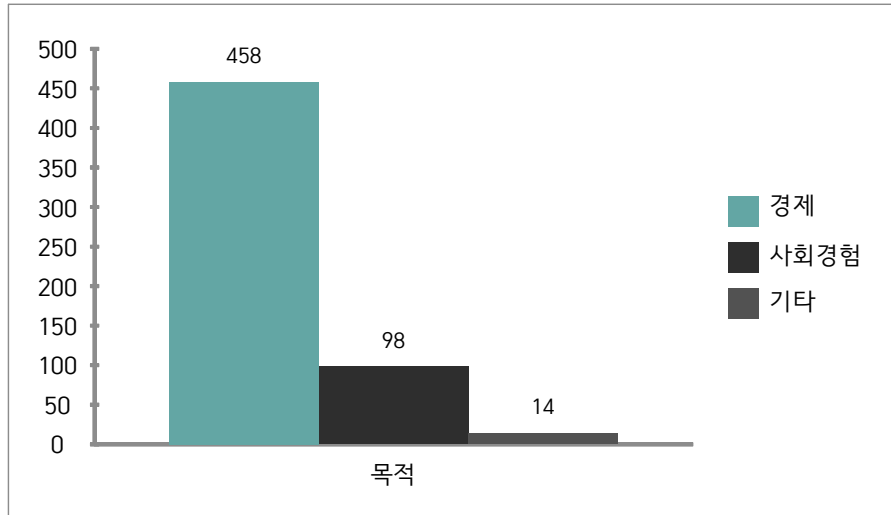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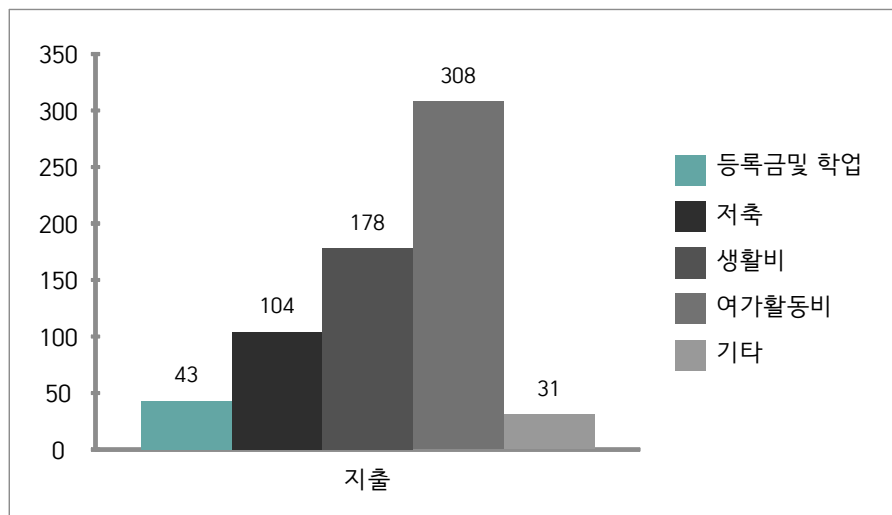


그림 18 임금 지출 계획 (명)



⑥ 노동강도

- 노동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힘에 부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19% (105명)나 되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50% 청소년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휴게장소의 경우도 54% 청소년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 노동 강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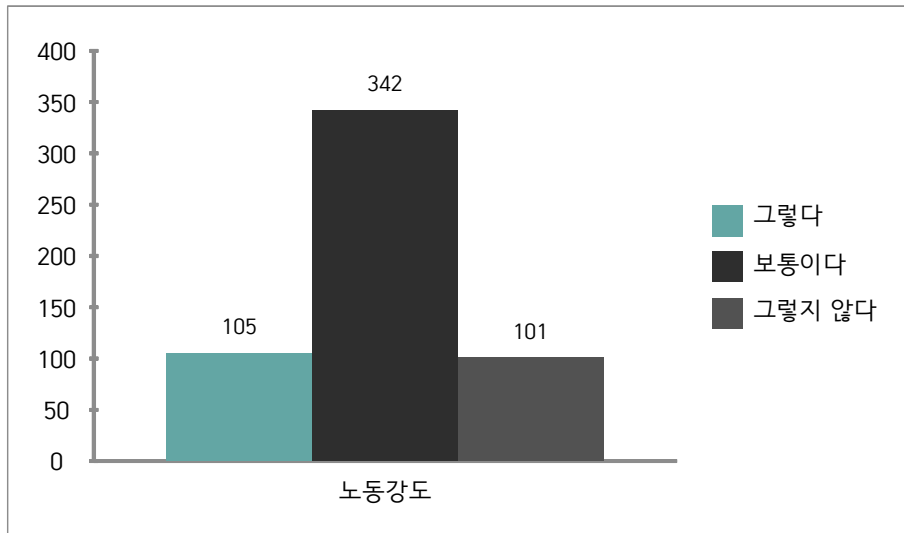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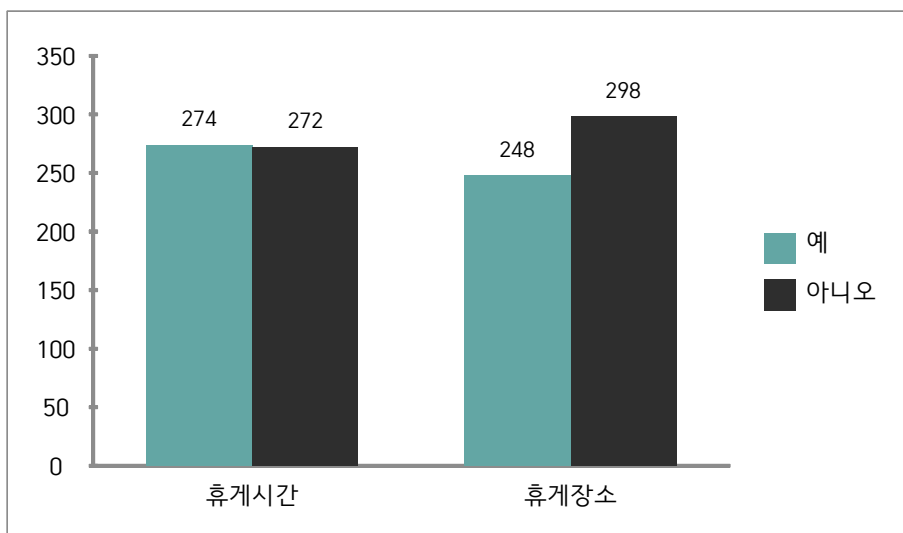


그림 20 휴게시간과 휴게장소 보장 여부 (명)



⑦ 부당한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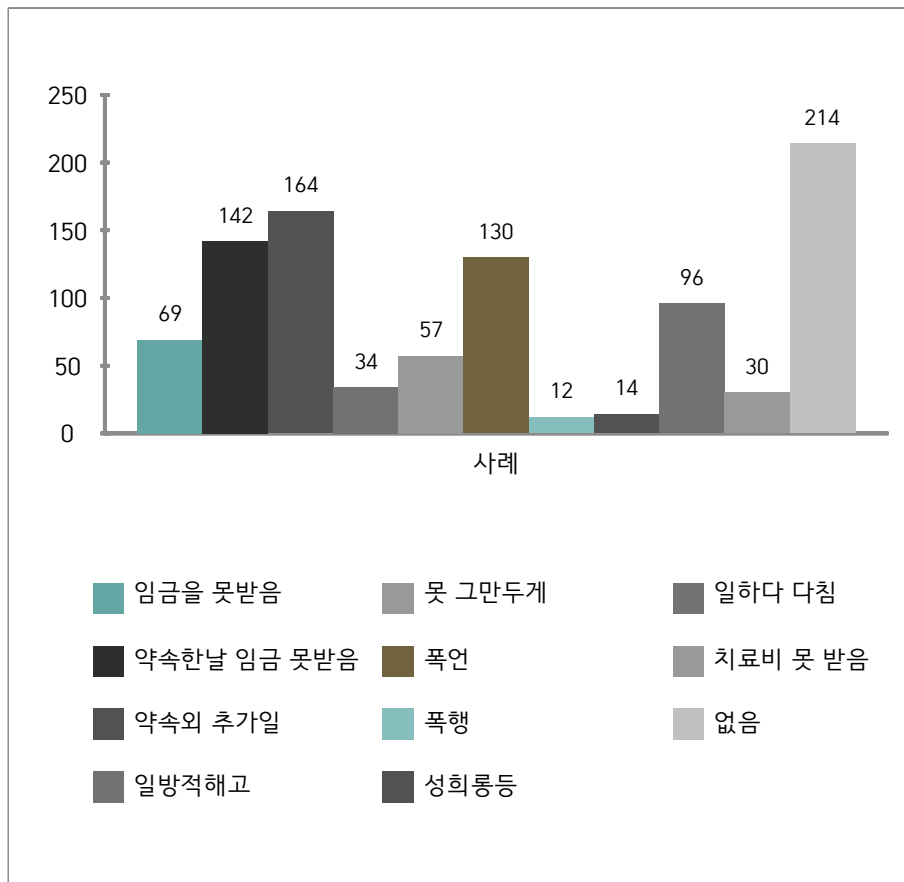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61% 학생들이 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의 예로는 가장 많은 경험으로 약속과 다른 일들을 시킨 경우와 다음으로는 임금을 제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 336명(748건으로 평균 2.2 건) 중 부당한 대우 사례의 2-3건을 보통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관련이 28%, 약속 외 근로가 21%, 퇴사관련이 12%, 폭언이 17%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희롱 등은 14명이나 해당하며, 이 중에 여성이 1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카운터 및 서빙 일을 하다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폭행을 경험한 12명의 청소년 중에 9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 96명중 30명(31%)이 치료비나 보상비를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1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 경험 (명)



-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62%의 청소년들이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었고, 20%만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였고, 13%는 어디에 해야 할지 몰랐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지거나, 신고한 응답자중 17%가 적극적인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2 부당한 대우 경험한 경우 대처 방법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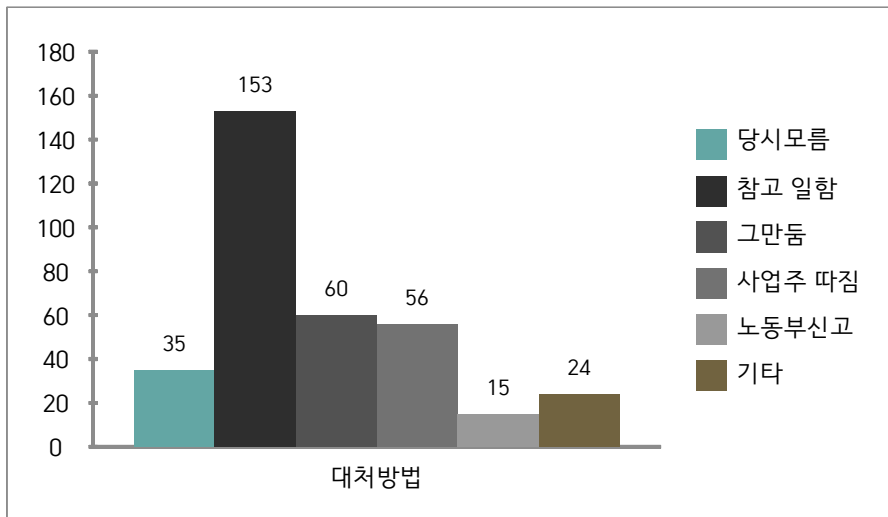


그림 23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 대응하지 않은 이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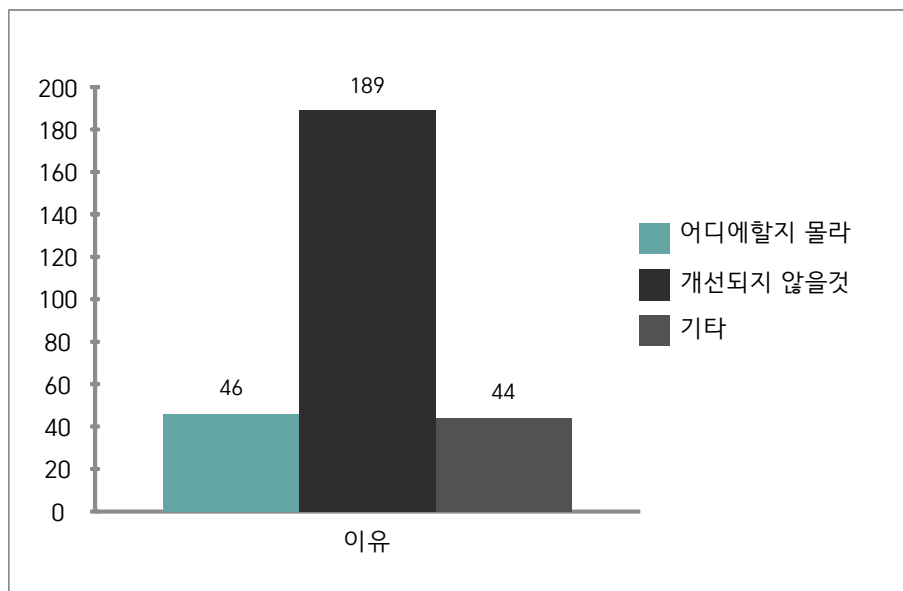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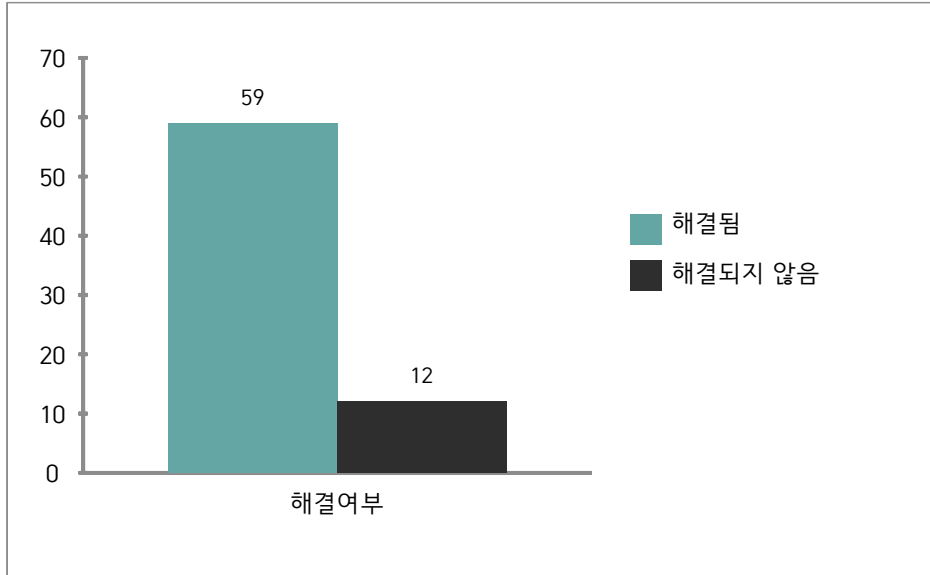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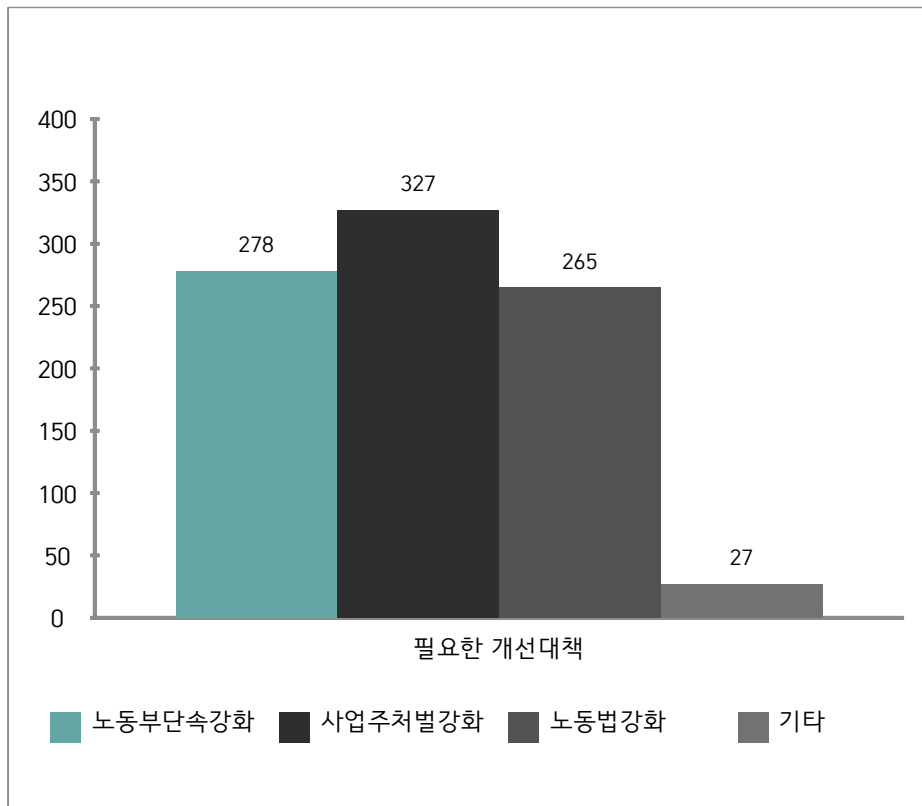
그림 24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 대응했을 때 해결 여부 (명)



⑧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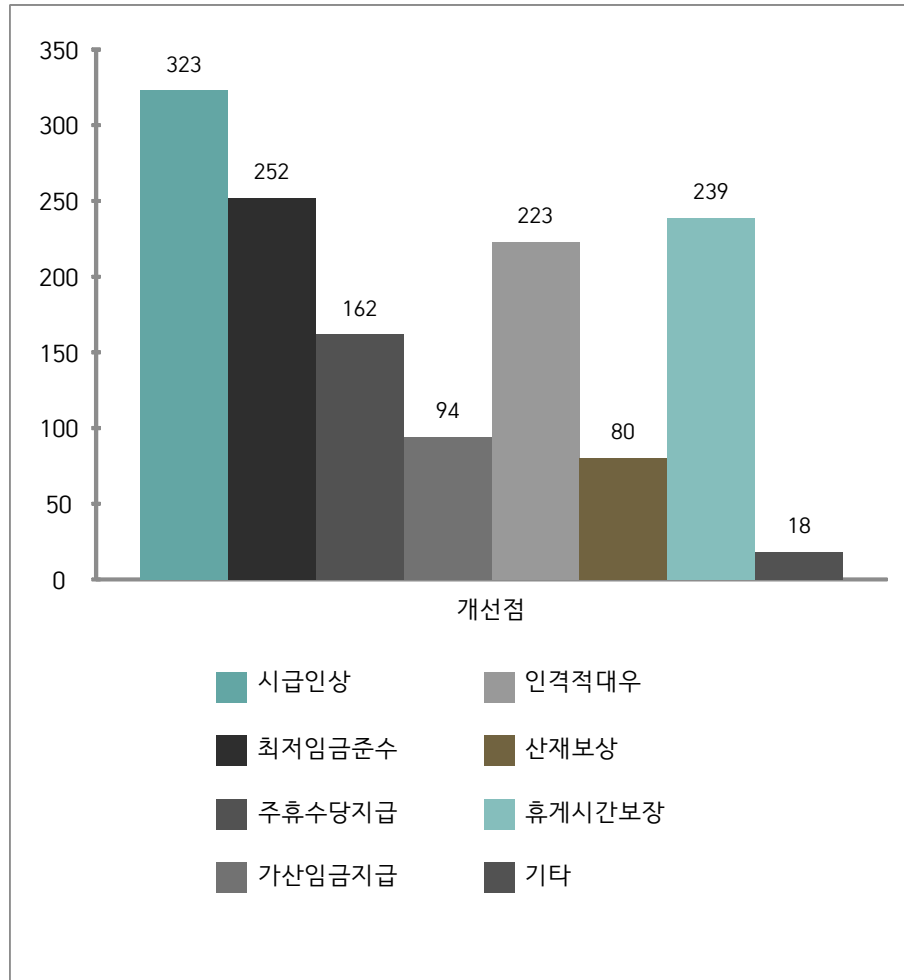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한 사례들을 줄이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개선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주처벌강화, 노동부단속강화, 노동법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25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생각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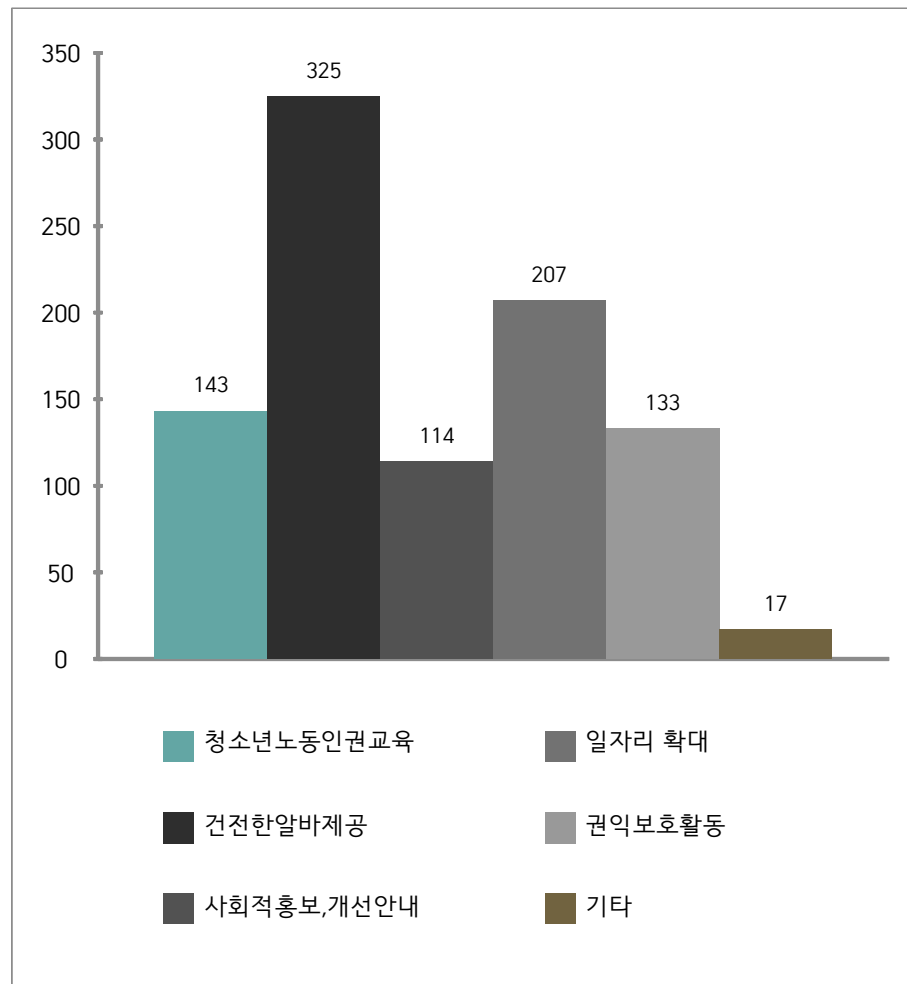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묻는 질문에는 시급임상,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인격적 대우, 주휴수당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26 시급한 처우 개선점에 대한 생각 (명)



- 대전광역시에서 아르바이트 현장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42%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회적 홍보·개선 안내, 권익보호활동(지킴이단)등을 꼽았으며, 35% 청소년들이 건전한 아르바이트 제공을 22% 청소년들이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그림 27 대전광역시에 바라는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명)



Ⅲ.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

1. 2016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20%나 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권리임에도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24%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년들은 25%로 전체 50%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도 20원정도 더 받는 청소년들도 많아 실제로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진다.
- 2)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직도 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 18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모, 후견인 동의서를 받지 않는 곳도 31%로 상당수 사업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나고 있다.
- 3)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이 심각하다.
주 15시간 이상 약속한 시간을 근무를 하면 받게 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67%나 되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미지급된 주휴수당, 체불임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4) 힘에 부칠 정도의 노동강도가 강하다.
전체 19%의 청소년들이 노동강도가 힘이 부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카운터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중 16%가, 택배에서는 36%의 청소년들이, 전단지는 27%의 청소년들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5) 휴게시간 보장과 휴게장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50% 정도 되며, 많은 청소년들이

휴게장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61%나 된다. 임금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28%), 약속 외 근로(21%), 퇴사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12%), 폭언(17%)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성희롱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12명의 청소년 중 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제대로 치료비를 받거나 보상비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인권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향

- 1)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청소년들은 사업주 처벌 강화와 노동부 단속 강화, 노동법 강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따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여전히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 2) 현재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환경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시급인상, 최저임금준수, 휴게시간보장, 인격적대우, 주휴수당 지급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당한 사례에서 욕설 등 폭언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응답으로 보여 진다.
- 3) 청소년들이 대전광역시에 바라는 아르바이트 현장 개선을 위한 요구로는 권리를 찾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요구가 높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회적 홍보와 개선안내, 권익보호 활동(알바지킴이단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전한 알바제공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IV.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1.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실

1) 특성화고 실습현장학생들의 노동인권

2011년 기아차 현장실습생 뇌출혈사고, 2012년 울산앞바다 선박사고 현장실습생 실종사건 등은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 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남겼다. 기아차 현장실습생의 경우 주간 노동시간 56시간을 훌쩍 넘긴 장시간 노동의 결과였다. 이 학생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스스로 기숙사 옥상에서 목숨을 끊었다. 현장실습 3개월 동안 사내폭행을 당하는 등 따돌림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울산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야간근무 도중 무너져 내린 공장 지붕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금지되어 있는 휴일, 야간 실습과 연장 실습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구의역 사고는 탈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청소년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또 있다.

올해 5월 7일 특성화고 출신으로 현장실습겸 조기취업으로 작년 12월 외식업체에서 근무해 오던 청소년이 세상이 등졌다. 전산관련 전공을 하던 김군은 조기취업을 위해 전공과 다른 외식업체를 선택했고, 2월에는 일하다가 발등에 화상을 당했지만, 산재처리하지 못하고 개인이 치료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는 무관하게 조기출근, 잦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비인격적인 대우로 힘들어 했다고 한다. 결국 김군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노동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언제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탈법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학교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인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2554명의 청소년이 음식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를 당했다. 이 중 53명은 사망해 1년에 10여명 꼴로 사망산재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났을 때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내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자가 39.4%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음식점, 연회장 서빙 업종에서도 청소년이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치료비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연회장에서는 휴게시간과 휴게장소 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1)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사전 예고없는 사업장 감독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현장 감독을 강화해 내야 한다.
- 청소년 알바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어 알바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장에 '노동관련법령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현장계시와 사업주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법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사업주 단속으로 탈법적 행위들을 근절시켜 내야 한다.
-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의 경우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체불임금의 경우 소액의 경우도 많아, 청소년들이 쉽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1.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1) 민관협력기구 구성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과 함께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노동인권 보호사업,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와 전담교사를 배치해야한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대우를 참는 이유 중에는 '나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구제절차를 잘 몰라서'라는 대답이 많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찾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부터 시작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낮은 노동인권지수를 높이고, 청소년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을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취업교육 중에 부분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한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있어, 외부의 민간 강사단과 협조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내에서도 노동인권 전담교사를 두어 학생들의 일상적인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상담과 구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에 힘쓸 수 있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고 없는 감시. 감독 강화로 철저한 단속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업주를 대상으로하는 사전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이 노동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5)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 등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찾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으로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한 대우들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찾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

(예 ‘알바지킴이단’ ‘현장체험활동’ ‘노동역사탐방’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2016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본 설문조사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금실태 등을 묻는 문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솔직히 적어주세요.

2016.5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준)
(문의 042-345-2569)

설문지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표하거나 빈칸에 적어주세요.(최근1년동안 경험을 답해주세요)

O.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 별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연 령	<input type="checkbox"/> 만15세이상 18세미만 <input type="checkbox"/> 만18세이상 20세미만 <input type="checkbox"/> 20대
근무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미만 <input type="checkbox"/> 1개월이상 3개월미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이상 6개월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근무시간	1일 시간 주_____시간
임 금	시급 원 (혹은 월급 원)
근무년도	<input type="checkbox"/> 2015년 <input type="checkbox"/> 2016년

I. 다음은 귀하의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정부에서 정한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아니오
2. 정부에서 정한 2016년도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예(☞3번) 아니오(☞2-1번)
- 2-1. 적정한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생각하니까? ()원

II. 다음은 귀하의 노동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3. 근로계약을 작성했나요? 예 아니오
4. (작성했다면) 1부를 교부 받았나요? 예 아니오
5. (만18세미만 응답자만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가 부모동의서를 요구하였나요?
예 아니오
6.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III. 다음은 귀하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까? (해당부분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카운터 및 서빙 (편의점, PC방, 음식점) 택배(상하차 등) 전단지 돌리기(스티커부착) 제한업종(유흥주점 등) 건설, 공장노동 배달 대형마트 기타
8.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경제적목적(용돈등) 사회경험 기타
9. 받은 임금은 어디에 지출할 계획인가요?
등록금 등 학업 저축 생활비(통신비 등) 여가활동비(여행,쇼핑 등) 기타

IV. 다음은 귀하의 노동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힘에 부칠 정도 일이 많나요?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1. 손님이 와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예 아니오
12. 손님이 와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예 아니오
13. 매주 쉬는 날이 있나요? 며칠인가요? 예(1주일에 일) 아니오

IV. 다음은 귀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모두 표 해주세요

문항	
임 금	<input type="checkbox"/>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
업 무	<input type="checkbox"/>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킨 적이 있다
해고/퇴직	<input type="checkbox"/>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적이 있다
폭언/폭행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
성희롱/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산 재	<input type="checkbox"/>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한 적이 있다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당한 경험이 없다

15.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 당시에는 부당하다는 것을 몰랐다 참고 일했다 그만 두었다
- 사업주에게 따졌다 노동부에 신고했다 기타

16. 부당한 대우에도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17.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부에 신고 한 적이 있다면, 해결되었나요? 해결이 안 되었다면 그이유는?

- 해결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유 :)

V. 다음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8. 사업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시급인상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가산임금 지급 인격적인 대우
산재보상 휴게시간 보장 기타 ()

19.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필요한 개선대책을 모두 골라주세요.

- 노동부 단속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노동법 강화
기타

20.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개선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만 골라주세요.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건전한 아르바이트 거리 제공 사회적 홍보 및 개선안내
일자리 확대 권익보호 활동(알바지킴이단 등)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